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하 "리볼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리볼빙 가입 前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mark>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 신용카드 신규발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리볼빙은 대출개념의 결제방식으로 이용 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결제일에는 약정하신 비율만큼만 결제됩니다.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별도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세요.
- 리볼빙 이용 중에는 **언제든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없습니다.**
- 리볼빙 이용 시엔 <u>개인신용평점이 하락</u>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 신청 후 계속 이용하면 갚아야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율(이자율)이 오르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고객님께 미리 고지 드립니다.
- <u>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결제대금이 부족</u>하더라도 <u>최소결제금액 이상으로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u> <u>연체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u>됩니다. 결제일 이후 결제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하셔도 <u>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u> **영업점,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리볼빙 약정해지는 영업점,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 개요

- □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거래 청구금액 중 고객이 은행과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 리볼빙계약 해지 시에는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거래	■ <mark>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mark>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등 일부거래 제외)
약정 기간	■ 신규 약정일로부터 <u>5년</u>
약정결제비율	■ 10 ~ 100%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 -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로,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선택가능
최소결제비율	■ 10 ~ 30% 내에서 은행이 정함 -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 -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및 거래행태 등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며, 이후 신용변동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이 변경·적용될 수 있음(반기, 연장 시 등) -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계산
수수료율	■ <u>4.5% ~ 18.7% 사이</u> 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신용변동, 금융환경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반기별)
결제금액 안내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안내

3 거래구조사례 비교

□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

이용금액 (예시)	적용되는 리볼빙 조건 (예시)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100만원 ※ 할부 등 리볼빙 미대상 거래는 사용하지 않음	최소결제비율 : 10%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 연 16%리볼빙 연체 수수료율 : 연 19%(적용 수수료율+3%)

ㅇ 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

결제일 통장 잔고	약정결제비율 <u>100%</u> 약정	약정결제비율 40% 약정	
100만원	100만원 결제, 다음 달 이월 대상액 없음	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80만원	80만원 결제, 2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통장 잔고가 최소결제비율(10%) 해당 금액(10만원) 미만]		
5만원	- 최소결제금액 10만원 중 5만원 출금 후, <u>나머지 5만원은 연체</u> (연체 중인 5만원에 연 19%의 연체 수수료율을 <u>연체 해소일</u> 까지 일할계산하여 부과) -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u>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u> (이월된 90만원에 연 16%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할계산하여 다음달 결제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 최소결제금액 계산 : 청구금액(100만원	원) × 최소결제비율(10%) = 10만원	

o 전월 이월잔액(일시불 60만원)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

구분	약정결제비율 <u>100%</u> 약정	약정결제비율 <u>40%</u> 약정	
리볼빙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다들당 약정청구 원금	(60만원 + 100만원) × 100% = 160만원 ※ 다음 달 이월금액 없음	(60만원 + 100만원) × 40% = 64만원 ※ 160만원 중 64만원을 차감한 96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이월	
 기보비 스스크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x 수수료율 x 이용	용경과일수 / 365 (윤년은 366)	
리볼빙 수수료	60만원 × 16% × 30/365 = 7,890원 (이용경과일수는 30일인 것으로 가정)		
리볼빙	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 리볼빙 수수료		
약정결제금액	160만원 + 7,890원 = 1,607,890원	64만원 + 7,890원 = 647,890원	
리볼빙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수수료		
최소결제금액	(60만원 + 100만원) × 10% + 7,890원 = 167,890원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약정결제금액(1,607,890원)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약정결제금액(647,890원)	
결제해야할 금액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4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

□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리볼빙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상	당월 결제금액 중 리볼빙 이용 가능금액 전체	결제(일시불) 건별 지정	-
매월 납부금액	약정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상 납부	분할금액(정액)	분할상환 등
수수료율	반기별(6개월) 변동	고정	고정
납부 기간	잔액 완제 시 까지	고정	고정

□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간 2023년 중 신용점수별 평균 수수료율 비교

구분		일시불 거래의	일시불 거래의 납부 이연서비스 카드대출(대출정보등		정보등록·공유)
		리볼빙	할부(유이자)	현금서비스	카드론
	900점 초과	12.37%	14.19%	16.13%	8.93%
신용점수 (KCB)	701~900점	14.23%	15.25%	17.67%	12.27%
(RCD)	700점 이하	15.40%	15.64%	18.37%	14.58%

- ㅇ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대출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하는 단기대출
- o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 하는 장기대출(DSR 산정 시 포함)

5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

기한연장	기한 연장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개별통보 하며,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해지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회원 탈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며, 고객에게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연체수수료율 및 기한이익상실

연체	리볼빙 수수료율 + 3%p,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
수수료율	-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미결제금액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수수료 부과
기한이익의 상실	연속 2회차 이상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u>리볼빙 청구액 전액</u> 이 <u>일시청구</u> 됩니다.

7 이월잔액 중도 납부 및 연체금액 납부

결제일에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 시 연체처리 되며,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잔여결제대금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u>이월잔액은 계좌에서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u>, 중도납부 희망 시 <u>영업점,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u>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영업점 : 영업점 방문 요청

o 고객센터 : IBK고객센터(☎1566-2566)

○ 인터넷뱅킹 : 개인인터넷뱅킹 > 메뉴 > 카드 > 카드결제 > 선결제 ○ 스마트뱅킹 : i-ONE뱅크(개인) > 메뉴 > 카드 > my > 결제 > 선결제

8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0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리볼빙 수수료 인상,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0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으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금리인하요구권 ■ 대상 □ 비대상
□ 은행과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취업, 승진 등 소득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점 : 영업점 방문 요청 ○ 고객센터 : IBK고객센터(☎1566-2566) ○ 인터넷뱅킹 : 개인인터넷뱅킹 > 메뉴 > 카드 > 카드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 스마트뱅킹 : i-ONE뱅크(개인) > 메뉴 > 카드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금리인하요구권 >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으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0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동 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한 지연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자료열람요구권

(2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o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등)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u>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u>을 요구**하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u>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u>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 서면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ㆍ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u></u>	<u> </u>
	리볼빙 이월잔액 발생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은행은 약정기간 종료 도래 시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 회원이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u>기존 약정기간으로 연장</u> 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연장 시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결제일 경과 후에는 <mark>리볼빙 이월잔액 중도납부</mark> 를 위해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은 입금하더라도 출금 되지 않으므로 <mark>은행에 별도로 연락하여 출금 요청</mark> 해야 하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mark>리볼빙 수수료율 및 최소결제비율</mark> 은 고객님의 신용상태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u>주기적으로</u>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리볼빙 최소결제금액 산출 시에는 <u>전월 리볼빙 이월잔액과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액의 합계</u> 에 <u>최설 결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임</u> 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본인은 IBK기업은행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함에 있어 은행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